|  |  |  |
| --- | --- | --- |
| **증치세 세율을 간소화하고 통합하는 유관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7]3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2017년 7월 1일부터 증치세 세율구조를 간소화하고 통합하여, 13%의 증치세 세율을 취소한다. 이에 유관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납세자가 아래 화물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세율은 11%이다.  농산품(양식 포함), 상수도, 난방,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식용 식물유, 냉기(냉방), 온수, 석탄가스, 주민용 석탄제품, 식용소금, 농기계, 사료, 농약, 농업용 비닐, 화학비료, 메탄가스,디메틸에테르,도서, 신문, 잡지, 음향•영상제품,전자출판물  상술한 화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본 통지 첨부1을 참고한다.  2. 납세자가 농산품을 매입하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1 본 조 제2항 규정을 제외하고, 납세자가 농산품을 매입하고, 일반납세자가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또는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를 취득하는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또는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에 명기된 증치세 세액이 매입세액이다. 간이과세방법에 따라 3% 징수율을 기준으로 증치세를 계산∙납부하는 소규모납세자가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취득하는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에 명기된 금액과 11%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농산품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취득(발행)하는 경우, 농산품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명기된 농산품 매입가격과 11%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2.2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기간 중,납세자가17% 세율 화물의 생산 판매 또는 위탁수탁가공을 목적으로 매입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제수준을 유지하고 변경하지 않는다.  2.3농산품 증치세 매입세액 심사확정과 공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세자가 매입한 농산물의 매입세액이 이미 심사확정 후 공제된 경우에는 현행대로<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업종 농산품 증치세 매입세액 심사확정과 공제방법 시범 시행에 관한 통지>(재세[2012]38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농산품 증치세 매입세액 심사확정 및 공제 시범사업의 업종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재세[2013]57호)에 따라 집행한다. 그 중, <농산품 증치세 매입세액 심사확정과 공제방법 시범 시행에 관한 통지>(재세[2012]38호 인쇄발행)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제율을 11%로 조정한다. 제3항에서 정한 공제율 조정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4 납세자가 도매, 소매과정에서 증치세 징수면제 정책을 적용 받는 야채, 일부 신선 육류∙달걀을 매입하여 취득한 일반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액 계산의 증빙이 될 수 없다.  2.5 납세자가 매입한 농산물을 17% 세율 화물의 생산 판매 또는 위탁수탁가공용으로 사용하고 또한 기타 화물 서비스의 생산 판매에 사용한 경우, 17% 세율 화물의 생산 판매 또는 위탁수탁가공에 사용된 농산물의 매입세액과 기타 화물 서비스에 사용된 농산물의 매입세액을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 각각 계산하지 않은 경우, 통일적으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또는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에 명기된 증치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거나 농산품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세금계산서에 명기된 농산품 매입가격과 11%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2.6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임시조례>제8조 제2관 제3항과 본 통지에서 칭하는 매출세금계산서는 농업생산자가 자가 생산한 농산품을 판매할 때 증치세 징수면제 정책을 적용 받아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  3. 본 통지 첨부 2에 열거하는 화물의 수출퇴세율(세금환급율)을 11%로 조정한다. 수출화물을 적용하는 수출퇴세율(세금환급율)은 수출화물통관단에 명기된 수출일자로 기준으로 결정한다.  대외무역기업이 2017년 8월 31일 이전에 본 통지 첨부 2에 열거된 화물을 수출하고 매입과정에서 이미 13%세율로 증치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13%의 수출퇴세율(세금환급율)을 적용한다.매입과정에서 11% 세율로 증치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11%의 수출퇴세율(세금환급율)을 적용한다.생산기업이 2017년 8월 31일 이전에 본 통지 첨부 2에 열거된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3%의 수출퇴세율(세금환급율)을 적용한다.화물 수출시기는 수출화물통관단에 명기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4. 본 통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전 유관규정과 본 통지에서 정한 증치세 세율, 공제율, 관련화물의 구체적인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신선육류∙달걀생산유통단계에서의 증치세 징수면제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2]75호) 제3조를 동시에 폐지한다.  5. 각 지역은 증치세 세율을 간소화하고 통합하는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조직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면밀하게 업무를 이행하며,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실시 이전에 각 종 준비 및 실시과정에서의모니터링분석과 홍보 및 해설 등의 업무를 잘 이행하여 증치세 세율 간소화 및 통합업무가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문제 발생 시에는 즉시 재정부와 세무총국에 보고하길 바란다.  첨부:  1.11% 증치세세율을 적용한 화물범위 주석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05/P020170502533246375344.doc>  2.수출퇴세율(세금환급율) 조정제품목록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05/P020170503366390401527.xls>  재정부  세무총국  2017년4월28일 |  | **关于简并增值税税率有关政策的通知**  财税〔2017〕37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自2017年7月1日起，简并增值税税率结构，取消13%的增值税税率。现将有关政策通知如下：  　　一、纳税人销售或者进口下列货物，税率为11%：  　　农产品（含粮食）、自来水、暖气、石油液化气、天然气、食用植物油、冷气、热水、煤气、居民用煤炭制品、食用盐、农机、饲料、农药、农膜、化肥、沼气、二甲醚、图书、报纸、杂志、音像制品、电子出版物。  　　上述货物的具体范围见本通知附件1。  　　二、纳税人购进农产品，按下列规定抵扣进项税额：  　　（一）除本条第（二）项规定外，纳税人购进农产品,取得一般纳税人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或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的，以增值税专用发票或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上注明的增值税额为进项税额；从按照简易计税方法依照3%征收率计算缴纳增值税的小规模纳税人取得增值税专用发票的，以增值税专用发票上注明的金额和11%的扣除率计算进项税额；取得（开具）农产品销售发票或收购发票的，以农产品销售发票或收购发票上注明的农产品买价和11%的扣除率计算进项税额。  　　（二）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期间，纳税人购进用于生产销售或委托受托加工17%税率货物的农产品维持原扣除力度不变。  　　（三）继续推进农产品增值税进项税额核定扣除试点，纳税人购进农产品进项税额已实行核定扣除的，仍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在部分行业试行农产品增值税进项税额核定扣除办法的通知》（财税[2012]38号）、《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扩大农产品增值税进项税额核定扣除试点行业范围的通知》（财税[2013]57号）执行。其中，《农产品增值税进项税额核定扣除试点实施办法》（财税[2012]38号印发）第四条第（二）项规定的扣除率调整为11%；第（三）项规定的扣除率调整为按本条第（一）项、第（二）项规定执行。  　　（四）纳税人从批发、零售环节购进适用免征增值税政策的蔬菜、部分鲜活肉蛋而取得的普通发票，不得作为计算抵扣进项税额的凭证。  　　（五）纳税人购进农产品既用于生产销售或委托受托加工17%税率货物又用于生产销售其他货物服务的，应当分别核算用于生产销售或委托受托加工17%税率货物和其他货物服务的农产品进项税额。未分别核算的，统一以增值税专用发票或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上注明的增值税额为进项税额，或以农产品收购发票或销售发票上注明的农产品买价和11%的扣除率计算进项税额。  　　（六）《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第八条第二款第（三）项和本通知所称销售发票，是指农业生产者销售自产农产品适用免征增值税政策而开具的普通发票。  　　三、本通知附件2所列货物的出口退税率调整为11%。出口货物适用的出口退税率，以出口货物报关单上注明的出口日期界定。  　　外贸企业2017年8月31日前出口本通知附件2所列货物，购进时已按13%税率征收增值税的，执行13%出口退税率；购进时已按11%税率征收增值税的，执行11%出口退税率。生产企业2017年8月31日前出口本通知附件2所列货物，执行13%出口退税率。出口货物的时间，按照出口货物报关单上注明的出口日期执行。  　　四、本通知自2017年7月1日起执行。此前有关规定与本通知规定的增值税税率、扣除率、相关货物具体范围不一致的，以本通知为准。《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免征部分鲜活肉蛋产品流通环节增值税政策的通知》（财税[2012]75号）第三条同时废止。  　　五、各地要高度重视简并增值税税率工作，切实加强组织领导，周密安排，明确责任。做好实施前的各项准备以及实施过程中的监测分析、宣传解释等工作，确保简并增值税税率平稳、有序推进。遇到问题请及时向财政部和税务总局反映。  附件：  1.适用11%增值税税率货物范围注释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05/P020170502533246375344.doc>  2.出口退税率调整产品清单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05/P020170503366390401527.xls>  财政部  税务总局  　　 2017年4月28日 |